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국가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기획재정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부처의 평가부담을 가중시키고, 평가 관대화 경향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함.

따라서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중립적인 재정당국이 직접 평가하는 통합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성과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안 제39조의3), 재정성과평가위원회를 도입하여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5 신설).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를 “따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대상 사업, 평가 항목, 평가 절차,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동 항에 따른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동항 전단에 따른 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획예산처장관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5조의8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의2에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5(재정성과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성과평가의 결과·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성과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및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선,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성과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br>----- 따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대상 사업, 평가 항목, 평가 절차,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br>-----<br>-----<br>-----<br>-----<br>-----<br>----- 동 항에 따른 평가-----<br>-----. |
|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1. 동항 전단에 따른 평가 ----<br>-----<br>-----                                                                                                                                                                                |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③ 기획예산처장관과 각 중앙관                                                                                                                                                                                                      |

<신 설>

서의 장은 법 제85조의8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의5(재정성과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성과평가의 결과·제도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성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선,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성과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                  |
| 연 락 처         | (044) 215 - 5312 |